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0 - 15 (3호)
안전유형	보고

「청탁금지법」 개정 추진

2020. 9. 9.



I.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(국민권익위원회)

1 추진배경 및 현황

-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의 **청탁금지법 제정·시행(16.9.28.)**
 - ※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(19.8월, 한국리서치) : 일반국민 87.7%, 언론인 79.2%, 공무원 96.6%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
- 법 시행 후 **부정청탁 대상임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 업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**를 위한 보완사항이 대두되어 법 개정 추진
- 2030 청년층 의견 수렴 등을 통한 **청탁금지법 개정안 마련** 및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(9.7.)에 따른 **입법예고 예정(9.11.~)**
 - ※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(4.27.~5.15.),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행정인턴 등 2030 간담회(7.29.~8.14, 6회)로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

2 개정 필요성

-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하는 '부정청탁'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열거
-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업무들에 대한 문제 제기

<보완 필요성이 대두된 사례(언론보도, 판례 등)>

- 교수가 지인인 타 대학 교수를 통해 자녀의 인턴 경력 등을 부탁한 의혹
- 같은 학교 소속 교수 자녀의 출석에 문제가 있음에도 부정하게 학위를 수여한 의혹
- 수용자에 대한 계호, 감시 업무를 하는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무죄(대전고등법원 2017노412 판결)

-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·보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「공익 신고자 보호법」,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신설된 조치들의 준용 필요
 - (보호)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,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, 신고자를 내실있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조치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(과태료)
 - (보상) 신고자, 협조자,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·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
- 현행법상 과태료 대상 위반사실은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게 되어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
 -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지 않고 가벼운 징계 또는 종결 등으로 미온적 처리
 - ※ (사례)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로부터 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에서, 제공자·수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제공자는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, 수수자는 훈계로만 조치
 - 금품등 제공자,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누락
 - ※ (사례 1) 공공기관 의사에게 환자가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사례에서 자진신고한 의사는 면책되더라도, 제공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해야함에도 후속조치 미비
 - (사례 2) 판매업체 직원이 물품 구매 담당 공직자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제공한 사례에서 직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, 법인인 판매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은 누락

3 개정사항

- (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)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
 - ‘견습생 선발’(안 제5조제1항제3호), ‘장학생 선발’(안 제5조제1항제5호)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여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구축
 - ‘논문심사·학위수여’(안 제5조제1항제10호), ‘연구실적 인정’(안 제5조제1항제12호) 업무를 명시하여 심사·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
 - 형의 집행, 수용자 지도·처우 및 계호 등 ‘교도관의 업무’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(안 제5조제1항제14호)하여 사각지대 해소
- (신고활성화 기반 공고화)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신고여건 조성
 - (신고자 보호) 청탁금지법 제정(15.3.27.) 이후 신설된 제도 도입
 - 신고자 비밀강화를 위해 신고자가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
 -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상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* 규정 준용 명확화
 - *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결정을 하며,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
 -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상 특별보호조치*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** 규정 준용 명확화
 - * 신고자가 신고 당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 가능
 - **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 - (신고자 보상) 위반행위 신고자,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에 따른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

-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 미통보 시, 국민권익위,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

4 향후 계획 및 협조요청 사항

- 개정안 홍보 및 국민의견 청취 방안

입법 절차	의견 청취 방안	시기
○ 개정안 마련	○ 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온라인 공청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배포	9.10.(목)
	○ 온라인 공청회 개최 - 전문가 토론회(9.11, 11:00) ※ KTV 국민방송 협업으로 영상 촬영, 국민권익위 유튜브(권익비전▶) 생중계 - 온라인 의견 등록(9.11.~20, 권익비전▶ 및 국민생각함) ※ 누구든지 생중계 및 그 이후에도 의견 등록 가능	9.11.(금) ~9.20.(일)
○ 입법예고(40일) 및 각종 심사 진행 - 규제, 성별, 부패, 통계(1개월) - 법제심사(1개월) ○ 차관회의, 국무회의 상정	○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의견 수렴 ○ 각종 쟁점 및 심사 대응	(입법예고) 9월3주~10월 4주 예정 (각종 심사) 10월말~11월 (회의 상정) 12월
○ 국회 제출	○ 국회 논의과정 지원 및 대응	'21년1월

- 협조 요청 사항

-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'온라인 공청회(9.11.~9.20.)' 적극 참여 및 관계기관(소속·산하기관 등) 전파

※ '전문가 토론회'(9.11.)의 경우, KTV 국민방송(온라인콘텐츠부)에서 장소 제공 및 영상촬영 협조 예정이며 추후 KTV에 방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(문체부)

- 입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급 기관의 적극적 지원 요청